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재의요구서

제출연월일 : 2024. 8.

제 출 자 : 대 통 령

재의요구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7월 30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별지에 기재된 이유로 그 내용대로 공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려는 것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재의요구서

2024년 7월 30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 유

1.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으로 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이 야당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지될 수 있어 정부의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 헌법상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가 행정권을 부여받고 있고,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담당자들을 국정운영의 방향을 함께할 사람들로 임명하여 국정을 운영합니다.
 - 따라서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라 함)의 구성 및 최종 의사결정 과정도 대통령과 정부의 의사가 우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대통령이 정부의 행정권 행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헌법 구조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함)은 방통위 위원 5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여 임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국회의 의사가 대통령의 의사보다 우월할 수 있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과 행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현행 방통위법은 방통위를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여당이 추천하는 1인, 야당이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행정권 행사와 그에 따른 책임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헌의 소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현행 방통위법이 ‘의사정족수’를 규정하지 않고 ‘의결정족수’만 재적위원 과반수로 규정한 것은 정파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방통위 위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정부의 방송통신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과 여당 측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게 하여 의결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 설령 국회의 과반을 차지한 야당이 위원 추천 자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여 국회 추천 3인이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 2인만으로 방통위 운영이 가능하게 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대통령의 행정권 행사와

국민에 대한 책임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핵심적 장치로서 입법권으로서도 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한계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개정안은 의사정족수를 4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야당 측 위원 2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야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위원을 임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의를 불가능하게 하여 방통위 기능의 마비를 초래합니다.
- 이와 같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2. 법령상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의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의 권익과 관련 있는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 방통위 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결원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방통위 위원 중 2인 이상이 임명 절차를 밟는 중이거나, 결격사유 조회 등으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상황과 같이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는 상황에서는 방통위 위원의 공석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 위원 5인이 모두 구성되어 있더라도, 이 중 1인이 병가 등으로 인하여 불참하는 와중에 다른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제척 또는 기피되거나 회피할 경우에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위원회 개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이렇게 위원회 개의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게 되면 그 피해는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법령상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들을 기한 내 처리할 수 없게 되고, 국민의 권익과 관련되어 시급히 처리해야 되는 방송통신 분야의 현안 처리가 늦어져 국민의 피해가 가중될 것입니다.

3.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습니다.

- 방통위법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 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신설 및 강화하는 것은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결정을 하는 위원회 의사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 그런데 개정안은 발의일 바로 다음날 소관 상임위에 개정안이 상정 되면서, 소관 부처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고, 상임위에서는 법안소위 절차를 생략하였으며, 추후 법사위 회의에서도 체계심사를 위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당 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4. 결 론

- 이와 같이 개정안은 정부의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지될 수 있어 정부의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크고, 법령상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이나 국민의 권익과 관련이 있는 현안의 처리가 늦어져 국민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며,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따라서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방통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며, 방통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별첨]

법률 제 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적위원”을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